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14
----------	-----------

제출연월일	2010. 4. 5.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개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삭제 등이 필요한 각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수입증지 및 현금 외에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으로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을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의 종류와 기준 및 금액을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3조, 안 별표 1의2 신설).

○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

나.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5조).

○ 일반 수수료의 경우 수입증지 외에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

○ 수입증지 요금제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경우 현금 외에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

다.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공동으로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발굴 및 개선방침에 따라 수수료의 반환규정 미비에 대하여 귀책사유를 고려한 수수료의 환불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단서 신설).

○ 발급기관의 착오나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라도 반환함

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를 정비함(안 별표 1).

- 행정안전부의 '사실확인서발급지침' 폐지 및 관계부처로의 사무 이관에 따른 신상에 관한 항목 정비
 - 부양가족사실확인 : 외교통상부 이관 ⇒ 존치
 - 독자사실확인 : 병무청 이관 ⇒ 존치
 - 호(제)적부 멸실확인(무적자사실확인) : 법원행정처 이관 ⇒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사실확인으로 명칭변경 존치
-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 삭제
 - (식품, 공중위생)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 관리대장 사본교부
 - 식품품목제조보고 사실확인 ⇒ 관리대장 사본교부
 - 철거사실 증명 ⇒ 건축물말소대장 사본교부
- 개별 법령으로 명시되거나 폐지된 수수료 항목 삭제
 - 지방세납세증명 ⇒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무료 발급
 - 건설기계 저당(말소)등록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수수료 명시(대당 1천원)
 -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 ⇒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으로 관련 규정 삭제
 - 조립실적확인
 -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 원천징수 공제증명
 - 보상금 지불증명 ⇒ 토지수용확인서로 대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전자정부법」 제33조, 제3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자동차 등록규칙」 제37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1. 28. ~ 2010. 2. 1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등록규제 완화 1건(제6조 기납수수료의 불반환)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요율)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의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거창군 수입증지를 붙이는 방법이나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급기관의 착오나 민원사무의 종결 전 취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요율)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요율)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의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거창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징수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거창군 수입증지를 붙이는 방법이나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및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해도 반환하지 않는다. <단서 신설>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 ----- ----- . 다만, 발급기관의 착오나 민원사무의 종결 전 취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1. 신상에 관한 사항			
(1) 이장재직사실확인	1통	800	
(2) 재직(퇴직,경력)증명	1통	1,000	
(3) 부양가족사실확인	1통	1,000	
(4) 독자사실확인	1통	1,000	
(5)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사실확인	1통	1,000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통	1,000	
3. 부동산에 관한 사항			
(1) 개별공시지가 확인 ※ 동일필지 공시일자별 추가	1필지	800 200	
(2) 개별주택 가격확인 ※ 동일주택 공시일자별 추가	1주택	800 200	
(3) 공동주택 가격확인 ※ 동일주택 공시일자별 추가	1주택	800 200	
(4)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가) 법 인 (나) 개 인	1건 1건	30,000 20,000	
(5)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가) 법 인 (나) 개 인	1건 1건	5,000 3,000	
(6)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20,000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4. 지방세에 관한 사항			
(1) 지방세 세목별 <u>과세증명</u>	1통	800	
5.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1건	5,000	
(2)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	1건	3,000	
6.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2) 입지기준 확인신청	1건	31,000	
(3)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	
(4) 석유판매업(일반,용제대리점) 등록	1건	20,000	
(5)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건	20,000	
(6)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등) 신고	1건	20,000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대리점,주유소,판매소)등록	1건	20,000	
(8)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0	
(9)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	1건	51,000	
(10)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신청	1건	24,000	
(11)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24,000	
(12)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1건	5,000	

구분	기준	금액	비고
7. 문화·관광 등에 관한 사항			
(1) 유원시설업 영업허가			
(가) 유원시설업 신규허가	1건	40,000	
(나)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20,000	
(다) 기타 유원시설업 신규허가	1건	20,000	
(라)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10,000	
(2) 공연장 등록(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	
(3)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일반, 청소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허가, 등록, 신고)	1건	20,000	
(4)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일반, 청소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변경(허가, 등록, 신고)	1건	10,000	
(5)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6)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	
(7)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1건	31,000	
8. 환경 등에 관한 사항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1건	10,000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신고)	1건	5,000	
9. 건설 등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건	5,000	
(2)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점용, 사용)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3) 소하천점 사용기간 연장신청	1건	1,300	
(4) 소하천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5,000	
(5) 소하천 준공검사 신청	1건	5,000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10.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			
(1) 공(시)영주택분양금납부 증명	1통	800	
(2) 표준주택 설계도면	1호	1,500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	
(4) 건축물대장 무등재 증명	1건	1,000	
(5)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800	
(6)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1,000	
(7)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1,000	
(8)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000	
(9) 체비지 분할 신청	1건	1,000	
(10)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1,000	
(11)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	1건	1,000	
(12)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1,000	
(13) 토지사용(체비지) 승락	1건	1,000	
(1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1필지	1,000	
※ 컬러발급 또는 도면첨부시	“	1,500	
11. 농·수·축산 등에 관한 사항			
(1)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건	800	
(2) 내수면어업 허가 및 면허신청	1건	10,000	
(3) 내수면어업 면허연장허가 신청	1건	5,000	
(4) 유해어업 사용허가	1건	5,000	
(5)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6) 비료수입업 신고	1건	10,000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12.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1) 의료기관 관련 신고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100,000	
(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40,000	
(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40,0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20,000	
(마)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0	
(2) 치과기공소 관련 신고			
(가) 치과기공소 인정	1건	20,000	
(나)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3) 안경업소 관련 신고			
(가)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8,000	
(나)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8,000	
(4) 위생관련 영업신고			
(가) 위생처리업 신고	1건	22,000	
(나)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12,000	
(다) 세척제제조업 신고	1건	29,000	
(라)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건	17,000	
(마)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 신고	1건	14,000	
(바)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 변경신고	1건	5,000	
13.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1) 급수공사 대행업자 검사신청	1건	4,000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1건	2,000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방서 교부 (가) 신 규 (나) 갱 신	1건 1건	4,000 2,000	
(4) 급수공사 설계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2,000 4,000 설계금액의 100분의1	
(5) 시공자재 검사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2,000 4,000	
(6) 준공검사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2,000 4,000	
(7) 수도계량기 시험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000 2,000	
(8) 정수처분 해제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2,000 4,000	
14. 그 밖의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건	500	

[별표 1의2]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
(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1) 주민등록등·초본	1통	200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500	
3) 제적등본	1통	500	
4) 제적초본	1통	300	
5)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통	500	
	연도 추가	100	
6) 토지(임야)대장	1통	300	
	추가 1장당	100	
7) 건축물대장	1통	300	
8) 자동차등록원부(관내)	1통	200	
9) 자동차등록원부(관외)	1통	1,000	
10) 건설기계등록원부(관내)	1통	300	
11) 건설기계등록원부(관외)	1통	1,000	
12) 농지원부(관내)	1통	500	
13) 지방세과세증명서	1통	500	